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150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정동만 · 김선교 · 안철수  
박형수 · 김승수 · 구자근  
김기현 · 김성원 · 이상휘  
강민국 · 유상범 의원  
(11인)

### 제안이유

과거 물품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편적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편의 확대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

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수출·해외진출·국제화’ 정의 마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수출·해외진출·국제화’를 정의함으로써, 용역 등 물품 외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통합공고, 통계 수집·분석·공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수출 및 무역환경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신설(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화 관련 대외환경 정보를 수집·제공하

고, 애로 접수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현행 법률 내 해외규격인증,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을 본 법안으로 이관하고자 함.

3) 수출 전략수립부터 통관·물류·유통과, 해외진출 사전준비·현지화 등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4)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국제화 추진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시하고자 함.

라.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해외 판로지원사업, 공동상표 도입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본 법안으로 이관하고자 함.

2) 국가 간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명시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발굴 및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고자 함.

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1) 국내외 지원거점 설치·운영, 재외공관·타 부처 해외거점·민간과의 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 등 국제화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국제화 추진을 위해 국제화 관련 교육,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바. 보칙 및 벌칙 사항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수출”이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해외로 이전(移轉)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진출”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해외의 지점이나 영업소 또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현지 법인의 설립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화”란 제2호에 따른 수출이나 제3호에 따른 해외진출과 관련한 행위를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출 및 해외진출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체계

제5조(국제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국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국제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통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국제화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협력 및 통합공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의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시행하는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화 지원정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화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제화 지원정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제화 동향 분석

5.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의 분석·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 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수출·수입 물품의 품명·수량·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정보

나. 중소기업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지급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3.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상품 및 서비스수출·수입의 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기술무역통계의 기술수출입 대가 지급 및 수령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기술도입자, 기술제공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국가명, 기술료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계약일, 도입기술명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국제화와 관련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대응체계(이하 “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분석 및 공유
2.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 창구 공동 운영
3.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제12조(환경변화 동향 파악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화와 관련한 대외환경 변화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변화 및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의 접수 및 청취
2. 통상 분쟁 발생 시 법률, 기술, 시장 전문가의 상담 및 자문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창구를 통해 애로 또는 피해가 접수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피해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융자·보증 및 긴급 물류·통관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된 지원정책을 긴급으로 실시할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국제화 지원시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화를 영위하거나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특수성
2.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수출 단계
3. 국내 경제 기여효과
4. 기타 국제화 지원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가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으로의 전환이나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의 산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2.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3.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및 물류 지원
4.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
5. 그 밖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인증 또는 규격 획득
2. 공급망 관련 규제 대응
3. 외국의 표시 규제 준수
4. 그 밖에 해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통관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입 물품의 신고 및 검사 관련 절차 지원
2. 수출입 통관에 관한 전문가 자문 지원
3. 그 밖에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물류 및 유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 물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운영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 또는 제31조에 따른 해외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물류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의 지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외진출 사전준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5.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현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현지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2. 해외 현지 투자 유치 지원
3. 현지 법률·세무·회계·노무 지원
4. 해외 현지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영업소, 지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2. 대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시 중소기업의 동반 참여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및 현지법인 공동 설립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 현지 공동물류 및 사후관리망 구축 지원
5.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국제화 추진 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한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이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해외진출 중소기업 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효과 점검을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

제25조(해외판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및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제27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과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관리,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국제화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

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장별 특화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시장별 특성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국제화 촉진 기반 조성
2. 해외시장별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화 촉진
3. 그 밖에 해외시장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국제화 촉진 기반 조성

제30조(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에 지원거점(이하 “해외진출

지원거점”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관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 기업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
3.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민간단체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2.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상담 · 컨설팅
3. 기술 · 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 · 향상을 위한 지원
4. 해외 공공조달 정보의 제공
5.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상담 · 컨설팅 지원
6.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7.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제화 동향의 분석
8.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분석
9.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국제화 촉진 지원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국가는 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⑤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화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발
2. 법제도, 금융 등 해외시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국제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4. 그 밖에 국제화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재정 및 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투자·보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③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36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국제 중소기업 협력 전담기관, 제33조에 따라 지정한 지원 전담기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7조제1항 각 호(제5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부장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과태료) ①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